

수원지방법원 2017. 9. 28 선고 2017가단512449 판결 [매매대금지급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17. 9. 14.

판결 선고2017. 9. 2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변호사 C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7,917,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. 5. 5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피고는, 원고 소송대리인이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.

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(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다2139 판결 등 참조). 그리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(대법원 1997. 9. 22. 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).

위 법리에 근거하여 이 법원은 2017. 8. 10.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소송위임장에 대해 인증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명한 바 있으나,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,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조영은